

보도자료

2011년 11월 11일(금)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통신정책국 통신이용제도과 최성호 과장(☎750-2550)
이승진 사무관(☎750-2556) lsung@kcc.go.kr**이동전화 단말기 식별번호(IMEI) 제도개선 계획 발표****- 내년 5월부터 이통사를 통하지 않고도 단말기 구입·사용 가능 -**

내년 5월부터 이동전화 대리점이 아닌 타 유통망에서 구입한 단말기도 USIM을 삽입하면 통신이 가능한 '개방형 IMEI 관리 제도'가 시행된다.

※ IMEI(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 단말기 국제고유 식별번호

※ USIM(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udle) : 가입자 식별카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동전화 단말기 식별번호(IMEI) 제도개선 계획'을 발표하였다.

미국과 유럽 등 해외의 대부분의 이통사는 IMEI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통신을 허용하고, 분실이나 도난 등 신고 된 단말기만 통신을 차단하는 '개방형 IMEI 관리 제도'를 운영해 이통사 이외에 제조사·유통업체 등 별도의 유통채널이 발달되고, 유통망에 구매 받지 않고 단말기를 자유롭게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다.

반면, 국내 이통사는 단말기의 IMEI를 자사의 시스템에 등록하고 등록된 단말기만 통신을 허용하는 '폐쇄형 IMEI 관리 제도'를 운영해 이통사 이외에는 유통망이 거의 없는 폐쇄적 구조가 형성되었으며 이에 따라 단말기 가격의 투명성 논란 야기, 이용자의 단말기 선택권 제약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또한 제조사의 장려금, 이통사의 보조금이 혼합된 유통구조로 단말기 가격경쟁이 촉발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특히, MVNO(이동통신 재판매사업자)의 경우, 독자적인 단말기 공급이 어려워 사업 활성화에 애로가 있었다.

이에 방통위는 이통사, MVNO, 국내외 단말 제조사, 관련 전문가 등으로 전담반을 구성하여 제도개선을 준비하여 왔으며, 이통사의 시스템 개발, 제조사의 단말기 생산, IMEI 통합센터 구축 등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내년 5월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제도개선 계획의 주요 내용>

① 개방형 IMEI 제도 도입

IMEI를 이통사에 등록하지 않은 단말기도 통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분실/도난 등 신고된 단말기 IMEI를 별도로 관리하여 통신을 차단하는 '개방형 IMEI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제도개선에 따라, 이통사에 등록되지 않는 단말기의 IMEI는 이용자가 기억하였다가 분실/도난시 신고하여 단말기의 불법사용을 막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통사가 이용자 편의 등을 위해 자사가 판매한 단말기의 IMEI를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사업자 자율로 결정하되, 이통사 이외의 유통망에서 구입한 단말기도 분실/도난에 대비하여 이용자가 희망할 경우 이통사에 IMEI를 등록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② IMEI 표기 개선

그동안 이통사가 IMEI를 관리해 오며 따라 국산 단말기는 IMEI를 외부에 표기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국내 제조사도 이용자가 IMEI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단말기 외부에 표기하기로 하였다.

③ IMEI 통합관리센터 구축

분실/도난 등 신고된 단말기의 불법사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신고된 단말기의 IMEI를 공유하고 통합 관리하는 IMEI 통합관리센터를 구축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해외 이통사와의 정보공유도 추진할 계획이다.

④ 단말기 구매방식에 제약없는 요금제 출시 유도

이통사 이외에서 구입한 단말기나 중고단말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요금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금제 출시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⑤ MMS 호환을 위한 표준화

이통사별로 서로 다른 규격을 사용하여, 단말기를 변경할 경우 MMS가 호환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스마트폰부터 MMS 규격을 국제표준인 OMA(Open Mobile Alliance, 모바일 표준화 기구)규격으로 통일하기로 하였다.

<기대 효과>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이통사의 대리점과 제조사 직영점, 유통업체, 온라인판매점 등 다양한 유통망이 등장하여 단말기 가격 경쟁을 유발하고, 저가형 단말기의 제조·유통을 촉진시킬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히고 이용자의 단말기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또한 단말기 보다는 요금과 서비스를 통한 경쟁이 유발되고 MVNO 및 선불요금제가 활성화되는 등 통신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첨부 이동전화 단말기 식별번호(IMEI) 제도개선 계획. 끝.

이동전화 단말기 식별번호(IMEI) 제도개선 계획

2011. 11.

차 례

I. IMEI 개념 및 관리현황	1
1. IMEI 개념	
2. IMEI 관리현황	
II. IMEI 제도개선 필요성	3
III. IMEI 제도개선 추진계획	4
1. IMEI 관리제도 개선	
2. 분실/ 도난 신고 된 단말기 관리강화	
3. 단말기 구매방식에 제약 없는 요금제 출시 유도	
4. 부가서비스 호환을 위한 표준화	
5. IMEI 제도개선 홍보	
IV. 제도개선에 따른 기대효과	7
1. 단말기 유통 시장	
2. 이동통신 시장	
3. 이용자 혜택	
V. 추진일정	8

I. IMEI 개념 및 관리현황

1. IMEI 개념

- o IMEI(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는 이동전화 단말기를 출고할 때 제조사가 부여하는 단말기 국제고유 식별번호
 - 3G(WCDMA)의 경우 단말과 USIM이 분리되어 있어 단말기 인증을 위해 IMEI를, 사용자 인증을 위해서 USIM이 이용됨

2G(CDMA)	3G(WCDMA)
<ul style="list-style-type: none">o 단말기 고유번호와 가입자 식별번호가 동일<ul style="list-style-type: none">- ESN(Electronic Serial Number) : 가입자 및 단말기 식별을 위해 단말에 부여된 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o 단말기 고유번호와 가입자 식별번호가 분리<ul style="list-style-type: none">- IMEI : 단말기 식별 번호- USIM(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 : 가입자 식별카드

- IMEI는 총 15자리로 구성되며 IMEI를 통해 국적, 제조사, 모델, 단말번호 등의 파악이 가능

<IMEI 식별번호 구성 및 내용>

구 분	자리 수	내용
TAC(Type Allocation Code)	AA	IMEI 인증기관 고유 번호
	BBBB CC	승인번호(Allocation code)
SN(Serial Number)	DDDDDD	단말기 고유 번호
CD(Check Digit)	E	EIR 등록 검증용 번호

- ※ IMEI 관리 : GSMA(세계이동전화사업자협회)가 IMEI 할당기관(미국, 영국, 중국, 인도)을 지정하고, 지정기관에 의해 할당된 IMEI를 DB로 관리

2. IMEI 관리현황

□ 국내현황

- 이통사는 단말기의 IMEI를 시스템에 사전 등록하고, IMEI가 등록되지 않은 단말은 통신을 차단하는 폐쇄형 IMEI 제도를 운영
 - 이통사는 이용자가 가입을 신청할 때, 자사 DB조회를 통해 IMEI가 등록된 단말기에 한해 개통을 허용
 - IMEI 관리 방식으로 인해, 이통사를 통하지 않고 구입한 신규 단말기는 통화가 되지 않으며, 타 이통사에서 구입한 단말기는 이용이 불가능
- 다만, USIM Lock 해제 의무화 정책('08년)과 아울러, '10.7월부터 SKT·KT가 IMEI를 공유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 개통 이력이 있는 단말기의 경우에는 단말기간 이나 사업자간에 USIM을 변경해도 바로 이용이 가능
 - ※ USIM Lock 해제 의무화 정책 : '06년 3G 도입시 이통사는 USIM이 탑재된 단말기는 해당 단말기에만 사용하도록 USIM 잠금을 설정하였으나, '08년 USIM lock 해제를 의무화하여 USIM을 다른 단말기에 장착하더라도 통화가 가능하도록 개선
 - 그러나, 이통사를 통하지 않고 구입한 신규단말기는 여전히 **USIM 이동이 불가능**

<폐쇄형 IMEI 제도에 대한 이통사의 입장>

- 이통사는 이용자가 단말기 분실/도난의 경우 IMEI를 몰라도 전화 번호만 신고하면 단말기의 불법 사용을 차단 할 수 있고
 - 단말기의 사양을 사전에 파악하여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등 **이용자에게 편리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

□ 해외 현황

- 유럽, 미국 등 해외 이동사의 경우 신고된 단말기의 IMEI를 별도 관리하면서, 신고된 단말만 통신을 차단하는 개방형 IMEI 제도를 운영
 -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다른 이동사나 제조사에서 유통한 단말기도 별도의 IMEI 등록 없이 사용이 가능
 - 이에 따라 이동사 이외에 제조사의 직영점, 편의점 등 별도의 유통채널이 발달

<단말기 IMEI 관리방식 비교>

구분	폐쇄형 제도	개방형 제도
관리방식	IMEI가 등록된 단말기만 통화를 허용	신고된 단말기만 통화를 차단
유통 주도권	이동사	제조사 등
시행국가	한국, 터키	미국, 유럽, 남미 등

II. IMEI 제도개선 필요성

- 이동사의 IMEI 관리제도는 이동사와 제조사가 계약된 단말기만 유통하여 이동사 중심의 수직적 유통망 구조를 형성하고 단말기 가격의 투명성 논란을 야기
 - 해외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다양한 유통망이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동사의 대리점 외에 유통망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폐쇄적 구조
 - 제조사의 장려금, 이동사의 보조금이 혼합된 유통구조로 단말기 가격의 투명성이 낮고 단말기 가격경쟁이 촉발되기 어려운 상황
- 국내외 단말제조사는 다양한 기종을 생산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이동사가 계약한 단말기만 유통하여 단말기 선택폭이 제한적임

- 특히, MVNO의 경우 이동사에 등록된 단말기만 유통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제조사와 별도의 단말기 수급계약 체결이 어려움

⇒ 단말기 유통경로 다양화 및 투명성 제고, 이용자의 단말기 선택권 확대, MVNO 활성화 등을 통한 통신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제도개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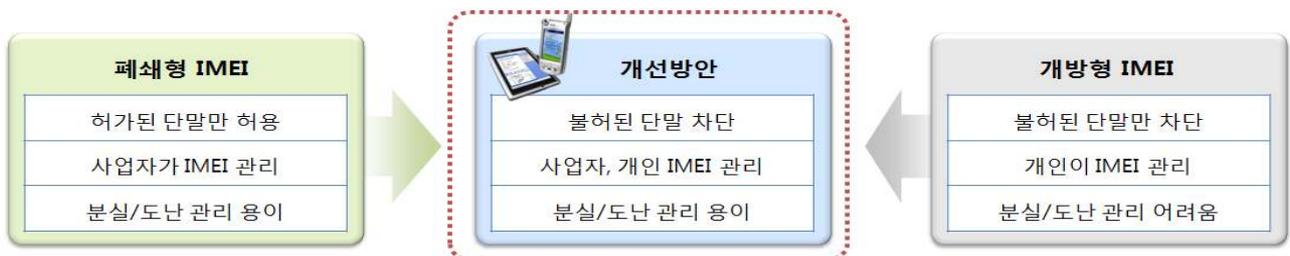
III. IMEI 제도개선 추진계획

- 이동사, MVNO, 제조사(국내외),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제도개선 방안 마련

1. IMEI 관리제도 개선

- (개방형 IMEI 제도 도입) IMEI를 이동사에 등록하지 않은 단말기도 통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분실/도난 등 신고 된 단말기를 별도로 관리하여 통신을 차단하는 **개방형 IMEI 제도 도입**
 - 이동사가 이용자 편익을 위하여 자사가 판매한 단말기의 IMEI를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사업자 자율로 결정
 - 이동사 이외의 유통망에서 구입한 단말기도 분실/도난에 대비하여 이용자가 희망할 경우 이동사에 IMEI를 등록할 수 있도록 운영

< IMEI 관리제도 개선방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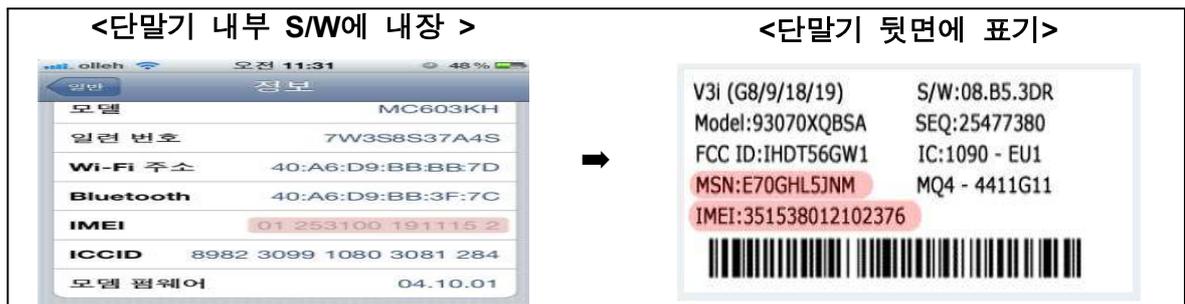


- (이통사 전산시스템 개발) 이통사는 개방형 IMEI 제도시행이 가능하도록 자사의 전산시스템을 개발

※ SKT, KT 12.4월까지 개발 예정, LGU+는 2G 사업자로 제외

- (IMEI 표기 개선) 제조사는 이용자가 IMEI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단말기 외부에 표기하고, 단말기 화면에서도 검색할 수 있도록 개선

< IMEI 표기방식 개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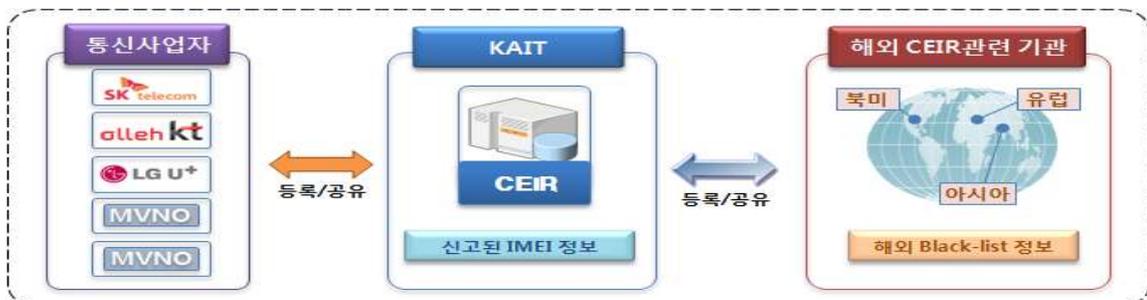
2. 분실/도난 신고 된 단말기 관리 강화

- (IMEI 통합관리센터 구축) 분실/도난 등 신고된 단말기의 불법사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통사 공동으로 IMEI 통합관리센터 구축

- 통합관리센터의 DB는 국내 이통사가 공동 활용하고, 향후 중국, 미국, 유럽 등과 DB를 공유하는 방안 추진

※ 통합관리센터는 이통사의 합의에 따라 KAIT(정보통신진흥협회)에 구축

< IMEI 통합관리센터(CEIR) 구축 >



※ 유럽은 분실, 도난 신고된 단말기 IMEI는 GSMA(GSM Association)에서 통합관리

※ CEIR(Central Equipment Identity Register) : IMEI 통합관리 DB

- (사후관리 강화) 인증 받지 않은 단말기의 국내 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인증기관의 시장 감시 등 사후 관리강화(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

3. 단말기 구매방식에 제약 없는 요금제 출시 유도

- 중고단말기를 이용하거나, 이통사 이외에서 구입한 단말기도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금제 출시 유도
 - 이통사에서 구입한 단말은 요금할인과 보조금 혜택이 있는 반면, 이통사 이외에서 구입하거나, 중고단말기를 위한 요금제는 미흡

4. 부가서비스 호환을 위한 표준화

- 부가서비스 중 MMS*는 이통사별로 독자 규격을 사용하여 이통사간 단말기를 변경할 경우 MMS 호환이 안됨

※ MMS(Multimedia Messaging Service) : 그림, 사진, 동영상 등을 보낼 수 있는 서비스

- 스마트폰의 경우 단말기를 변경해도 MMS가 호환될 수 있도록 이통사의 MMS 규격을 국제표준(OMA*-MMS)으로 단일화

※ OMA(Open Mobile Alliance) : 모바일 개방형 표준개발을 위한 표준화 기구

※ 국내 이통사는 국제표준보다 진보된 별도 규격운영(콜백URL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가능)

5. IMEI 제도개선 홍보

- 이통사, MVNO,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관련부처와 협력하여 IMEI 제도개선 내용 언론 홍보 및 홍보책자 제작·배포
 - 제도개선에 따라 IMEI를 개인이 관리하는 방법, 이통사에 위탁하는 방안 등 IMEI 제도개선 내용 홍보
 - 이통사의 대리점, 홈페이지 등에 단말기 분실/도난시 대처요령 등을 안내하고 정확한 안내를 위해 대리점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IV.

제도개선에 따른 기대효과

1. 단말기 유통 시장

- (유통망 다변화) 이통사의 대리점과 제조사 직영, 대형 유통업체, 온라인판매, 수입판매점, 편의점 등으로 유통망이 다변화 될 전망
- 제조사와 이통사가 계약한 단말기만 유통하던 방식에서 국내외에서 생산된 여러 기종의 단말기가 다양한 유통망을 통해 판매

< 단말 유통 경로의 다양화 >



- (단말기 가격) 다양한 단말기 유통주체의 등장은 단말기 가격 경쟁 유발을 통한 단말기 가격인하 및 가격의 투명성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
- 다양한 유통망 등장, 해외 단말기의 자유로운 수입·유통은 국내 단말기 제조사에 가격인하 압력으로 작용하고 저가형 단말기의 제조·유통이 활발해 질 전망

2. 이동통신 시장

- (통신요금 경쟁) IMEI 제도개선은 그 동안 이통사가 단말기와 서비스를 결합하여 독점판매 하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오고
- 경쟁력 있는 유통망의 등장은 이통사가 단말기 중심 마케팅 전략에서 통신요금, 서비스 차별화 전략의 중요성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

- (MVNO 활성화) MVNO 사업자의 단말기 수급 애로가 해소되어 가입자 모집이 원활 해 지는 등 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 재고 단말기나 중고폰에 의존하던 MVNO 사업자가 단말기 제조사로 부터 독자적인 단말기 수급이 가능
- ※ 국내에는 이동사가 제조사와 공동개발한 단말기만 유통되어 MVNO는 이동사가 지원하는 재고 단말기나 중고단말기를 활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

3. 이용자 혜택

- (단말기 선택권 확대) 이동사와 계약된 단말기만 국내에 유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단말기의 제조·유통이 가능하여 단말기 선택권이 증대
- (통신요금 부담 완화) 이동사의 단말기 통제력 약화, MVNO의 경쟁력 확보는 단말기 보다는 요금과 서비스 경쟁을 유발하여 요금인하가 촉진 될 것으로 전망
- MVNO 활성화는 저렴한 요금제의 출시를 활발하게 하고 기존 이동사와 경쟁할 경우 이동사도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 경쟁 상품 출시가 불가피
- 저가 단말기 활성화 등 단말기 수급 문제가 해결되면 이용자는 선불요금제 등 통신비 절감을 위해 요금제 선택이 용이

V. 추진일정

- 이동사 시스템 개발 및 통합관리센터 구축(~12.4월)
- 개방형 IMEI 제도 시행(12.5월~)
- IMEI가 표기된 단말기 출시(12.5월~)